

의안 번호	314
----------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2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14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3.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 민간(관리동)어린이집 4개소의 국공립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7개소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신규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 전환설치(1개소) : 해와별어린이집(가정→국공립)
 - 신규설치(4개소) :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1단지 어린이집 등 4개소
- 재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25. 2. 28로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

나.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신규위탁 및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19p

□ 주요내용

- 신규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5개소는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 1개소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1)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하는 시설 4개소로 개원일로부터 5년간 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과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규위탁 대상 시설 및 소요예산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행정동)	정원	면적	소요예산 (천원)	비 고
전환 (가정→국공립)	해와별 어린이집	화랑로48길16 (석관동)	20	65㎡	270,000	10년 무상사용 2025.3월 개원예정
신규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1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3동)	58	399㎡	180,000	2025.4월 개원예정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2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2동)	56	396㎡	180,000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3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3동)	41	283㎡	160,000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4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2동)	27	173㎡	140,000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① 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재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7개소로 위탁 기간이 2025. 2. 28자로 만료 되기에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위탁 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느티나무어린이집 (정용기)	홍천사길29 (돈암2동)	대한불교조계종 홍천사(송현준)	80/57	2020.03.01. ~ 2025.02.28.
2	보문제일어린이집 (정경숙)	보문로13길3 (보문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보문제일교회(신태하)	47/34	
3	성북생명숲어린이집 (주혜은)	서경로173 (정릉4동)	개 인 (주혜은)	79/72	
4	순복음어린이집 (정은미)	오패산로89 (월곡1동)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정재명)	45/25	
5	연화어린이집 (김경희)	개운사길60-46 (안암동)	중앙승가대학교 (천원배)	23/-	
6	원정어린이집 (백남희)	보국문로28길10 (정릉4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정교회(김윤희)	65/50	
7	키움누리어린이집 (최미옥)	서경로60 (정릉1동)	개 인 (최미옥)	23/23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3)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시 공개 경쟁이 아닌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최초위탁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4) 및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제1항5)에서는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6),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